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402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5조 제7호)

1)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추진실적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및 목표 달성도 등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안 별표 1의2 제3호)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상한선(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을 초과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조의2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조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추진실적 평가 등) ①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 목표 달성도

4.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1의2제3호 중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다만,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1. ~ 5. (생략)
6. 제8조에 따른 <u>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6. 제8조에 따른 <u>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7. 제8조의2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u>
<u>7.</u>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u>8.</u>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 ③ (생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u>시행</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u>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u>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④ ----- ----- <u>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u> ----- -----

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 --. <u>제8조의2(추진실적 평가 등) ①</u> <u>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u> <u>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u> <u>3. 시행계획 목표 달성도</u> <u>4.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u>

[별표1의2] 1·2 (생 략)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u>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4. (생 략)	[별표1의2] 1·2 (현행과 같음) 3. ----- ----- ----- -----<u>다만,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